

원격수업 운영 규정

제정 2021. 2. 4.

제1차 (전문)개정 2021. 6. 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 라 한다)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원격수업이라 함은 인터넷, 정보통신 등의 수단을 통하여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하며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.
② 원격활용교과목이란 교수-학습 활동의 일부가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
③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원격활용교과목 중 교수-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 단, 비동시적 원격수업교과목의 한 형태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 평가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“e-러닝”이라고 한다.
④ “학습관리시스템(LMS, Learning Management System)”이라 함은 온라인을 통하여 교수-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 (위원회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 · 관리를 위하여 “원격수업관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교육연구처장, 미래교육혁신원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교원, 학생,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.
③ 위원장은 교육연구처장이 되며,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담당하며 간사를 두되 직원이 된다.

제4조 (회의 및 심의사항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원격수업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
2. 신규 원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
3.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
4.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5. LMS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매체 및 콘텐츠 기획·제작에 관한 사항

7. 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타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항

제5조(원격활용교과목 개설) ① 원격활용교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을 원칙으로

한다.

- ② 원격활용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계절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다.
- ③ 원격활용교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으며, 교과목 내 원격활용 비율과 그에 따른 개설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④ 원격활용교과목은 수업계획서의 주차별 계획에 원격활용여부를 표기하여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비동시적 원격수업교과목 개설)

- ① 전공교과의 원격수업교과목은 전공교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위원회는 심의 후 개설된 원격수업교과목 현황을 학사지원팀과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통보한다.
- ② 교양교과의 원격수업교과목은 교양교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각 학과 단위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강좌의 분반은 교양교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위원회는 심의 후 개설된 원격수업교과목 현황을 학사지원팀과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통보한다.

제7조(원격수업 운영방법)

- ① 원격수업의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(LMS)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비동시적 원격수업의 경우 강의콘텐츠 재생시간, 질의·응답 및 온라인 토론시간 등을 포함하며, 1차시당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, 콘텐츠 재생시간은 1차시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 단, 토론,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은 콘텐츠 재생시간을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.
- ③ 비동시적 원격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동시적 원격수업의 경우 출석수업에 준하여 운영한다.

제8조(원격수업 출석 및 평가관리)

- ①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(접속시간 등을 포함한다)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② 학생의 성적평가(중간시험, 기말시험 등)는 직접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원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관리시스템(LMS)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
- ④ 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담당교원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

확인될 경우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.

제9조(원격수업교과목 학점인정)

- ① 동 규정 제5조와 제7조에 의거 개설된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된다.
- ② 동시적 원격수업의 이수시간은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③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인학습자 학사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10조(강의시수 인정) 교원이 원격수업교과목 강의 시 강의시수를 인정하되, 강의시수는 출석수업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) 교수자는 제작한 콘텐츠의 운영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, 학습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 (수업의 질 관리) ① 원격수업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 ② 통상적인 사회규범, 인권 등에 해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(LMS) 탑재를 제한할 수 있다.
 ③ 교수 · 학습 효과 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당교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.

제13조(공동 교과목) 제11조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KCU 및 MOOC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,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저작권) ① 본교에서 개설한 원격수업 강좌의 저작권은 담당교원과 본교에서 공동으로 가진다.
 ② 담당교원은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.
 ③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 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, 그 개발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지대학교 학칙,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 (기타사항) ① e-러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77, 2021.02.04.)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324, 2021. 6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이전의 “e-러닝 운영규정”은 폐지한다.